



## 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안내

---

1. 관련: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(교육부령 제291호, 2022.12.13. 일부개정)
2.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2022.12.13. 공포·시행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각 기관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원자격검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주요 개정 내용: **교육감 및 대학의 장**은 교원자격검정 신청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**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**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**요청**하도록 한편,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**재교부 수수료를 면제**하고, **부전공과목 표시과목 표시방식**을 개선
  - 나.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- 다. 현 시점('22.12.13.) 기준 무시험검정원서를 기존 양식으로 이미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'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'를 추가하여 기존 원서 활용 가능  
※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조회 회신서 첨부
3.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에게 **동 개정령의 내용을 안내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문서는 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전체(교육대학,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육과,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및 전문대학)에 안내하는 내용입니다.

붙임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교육부령 제291호) 1부. 끝.

## 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시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전체,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, 국군간호사관학교장

교육연구사 권기정 교원양성연수 과 장학관 김율리 교원양성연수 전결 2022. 12. 13.  
과장 조재익

협조자

시행 교원양성연수과-6747 (2022. 12. 13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/ [www.moe.go.kr](http://www.moe.go.kr)

전화번호 044-203-6488 팩스번호 044-203-6706 / [coolzalove1@korea.kr](mailto:coolzalove1@korea.kr) / 대국민 공개